



2026년 5월 월간 법령 뉴스레터

제1부: 세금 관련 법령 정책

1. 시행령 제144/2026/NĐ-CP호 (2026.05.05.) 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1/2025/NĐ-CP호(제359/2025/NĐ-CP호로 개정)의 일부 개정 (공포일: 2026.05.05.; 시행일: 2026.06.20.)

500만 동 이상 할부·후불 구매 시 비현금 결제 증빙에 관한 신규 규정: 결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500만 동 이상의 할부·후불 구매 건도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. 구체적으로:

- 구매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할부·후불 구매 재화·서비스의 경우, 사업자는 서면 구매계약서,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및 해당 재화·서비스의 비현금 결제 증빙을 근거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습니다.
- 계약서 또는 계약 부속서상 결제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, 사업자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계약서·계약 부속서상 결제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비현금 결제 증빙이 없는 경우, 사업자는 해당 결제의무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증빙이 없는 재화·서비스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감액 조정 이후 비현금 결제 증빙을 확보한 경우, 사업자는 해당 증빙을 확보한 과세기간에 그 증빙이 있는 재화·서비스 가액에 해당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·공제할 수 있습니다.

제2부: 회계·감사 관련 법령 정책

1. 시행규칙 제58/2026/TT-BTC호 (2026.05.25.) — 초소규모기업 회계제도 지침, 재무부 공포 (공포일: 2026.05.25.; 시행일: 2026.07.01.)

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초소규모기업 회계제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:

(i) 초소규모기업은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, 법인세 납부 방법을 근거로, 시행규칙 제58/2026/TT-BTC호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, 동 시행규칙 제10조의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. 초소규모기업이 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, 법인세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, 기업의 납세 방법에 부합하는 시행규칙 제58/2026/TT-BTC호상 회계장부 목록을 적용합니다.

(ii) 회계연도 중 기준 변경으로 인해 초소규모기업이 더 이상 시행규칙 제58/2026/TT-BTC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,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동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며,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회계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.

(iii) 초소규모기업은 자사의 생산·경영활동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맞게 중소기업 회계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,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는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. 적용 회계제도의 변경은 다음 연도 회계기간 개시일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(iv) 가구·개인사업자가 시행규칙 제58/2026/TT-BTC호에 따른 회계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는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. 적용 회계제도의 변경은 다음 연도 회계기간 개시일에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(v) 생산·경영활동의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맞추기 위해, 초소규모기업은 시행규칙 제58/2026/TT-BTC호에서 안내하는 회계증빙·장부 서식 외에 추가 서식을 설계하거나 기존 서식을 개정·보완할 수 있습니다.

기업이 개정·보완한 회계증빙·장부 서식은 2015년 회계법 제16조 및 제24조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기업의 자산과 자본을 검사·통제·대조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하며 진실하고 투명하게 반영해야 합니다. 다른 법령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회계증빙이 발생하는 경우, 기업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.

(vi) 초소규모기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고 세무당국의 세금관리 정보시스템으로부터 부가가치세, 법인세 및 기타 납부세액(해당하는 경우)에 관한 확정·통지 지원을 받는 경우, 초소규모기업은 시행규칙 제58/2026/TT-BTC호에서 안내하는 회계장부 서식을 사용하여 세무당국의 통지에 따른 납부세액을 추적·대조합니다.

제3부: 임금·보험 관련 법령 정책

1. 시행령 제85/2026/ND-CP호 (2026.03.25.) — 보충연금보험에 관한 규정 (공포일: 2026.03.25.; 시행일: 2026.05.10.)

2026년 5월 10일부터 적용되는 보충연금보험 가입 절차. 이에 따라 보충연금보험 가입 절차는 시행령 제85/2026/ND-CP호 제6조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:

- 사용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합니다. 합의가 이루어진 후, 사용자는 자발성·평등성·성실성·협력성·정직성의 원칙에 따라 각 근로자와 보충연금보험 가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거나,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과 체결합니다. 합의서의 기본 내용은 시행령 제85/2026/ND-CP호에 첨부된 부록 II의 규정에 따릅니다.

- 사용자는 연금기금 운용기업과 보충연금보험 프로그램 가입 계약을 체결합니다. 프로그램 가입 근로자 명단을 근거로, 연금기금 운용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합니다.

- 등록된 보충연금보험 프로그램 및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근거로,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분(해당하는 경우)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탁한 대납분(해당하는 경우)을 보충연금보험기금에 납입하고, 규정에 따라 각 근로자별 납입액을 연금기금 운용기업에 통지합니다.

- 시행령 제85/2026/ND-CP호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기금 가입자 개인연금계좌별 납입액은 다음을 포함합니다:

- +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금액(해당하는 경우).
- + 근로자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(해당하는 경우).

제4부: 기업·투자 관련 법령 정책

1. 시행령 제187/2026/ND-CP호 (2026.05.27.) 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접수 이후 국가자본 출자 기업의 법정대리인 변경, 그리고 파산절차 개시 결정 이후 기업·협동조합의 활동 및 그 감독에 관한 회생·파산법 시행 지침 (공포일: 2026.05.27.; 시행일: 2026.05.27.)

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기업·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:

(1) 기업·협동조합의 법정대리인이 자신의 권리·의무 수행을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은 채 30일을 초과하여 베트남에 부재하는 경우;

(2) 기업·협동조합의 법정대리인이 사망, 실종, 형사책임 추궁, 구속, 징역형 집행, 강제치료시설·강제교육시설에서의 행정처분 이행, 거주지 도피 상태에 있거나, 민사행위능력이 제한·상실되었거나, 인지·행위통제에 어려움이 있거나, 법원으로부터 특정 직무·직업 수행이 금지된 경우;

(3) 국가자본 출자 기업의 법정대리인이 동시에 소유주 직접대표자 또는 국가자본 대표자인 경우로서, 국가자본의 기업 내 관리·투자에 관한 법령 및 국가자본 대표자·직위 보유자 관리에 관한 법령상 기능·임무·권한에 따라 소유주 대표기관이 해당 대표자가 기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한 경우;

(4) 판사가 결정하는 기타 경우.

2. 결의 제66.17/2026/NQ-CP호 (2026.05.15.) — 조건부 투자·사업 업종 축소·개정, 정부 공포 (공포일: 2026.05.15.; 시행일: 2026.07.01.; 유효기한: 2027.02.28.)

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·사업 업종 목록

- 인장 제조업;
- 보조무기 취급업(수리 포함);
- 폭발류 취급업(폭발성 폭발 제외);
- 녹음·녹화·위치추적용 위장 장비·소프트웨어, 이동통신 전파 방해·차단 장비 취급업;
- 군·경 소속 군수품·장비, 군용 무기, 군사·공안 전용 장비·기술·기재·수단; 이를 제작하기 위한 부품·부속품·자재 및 특수 장비·전용 기술의 취급업;
- 전당포업;
- 안마업;
- 경비업;
- 변호사업;
- 공증업;
- 사법감정업;
- 감사업;
- 보세창고·소량화물집하장 취급업;
- 통관·집결·검사·감시 장소 취급업;
- 증권업;
- 증권 등록·예약·청산·결제 서비스업;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거래지원 서비스업;
- 보험업(보험 부대서비스 제외);
- 감정평가업;
- 복권업;
- 상금형 오락업(외국인 대상 상금형 전자오락, 카지노 및 베팅 포함);

- 신용평가업;
- 자발적연금기금 운용업;
- 석유·가스류 취급업;
- 산업용 폭발물 취급업(폐기 활동 포함);
- 폭발물 전구체 취급업;
- 산업용 폭발물 및 폭발물 전구체를 사용하는 업종;
- 발파 서비스업;
- 화학물질 생산·취급업(2025년 투자법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금지 화학물질·광물 목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;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업; 화학물질 전문 자문업;
- 담배제품·담배원료·담배전문 기계설비 취급업(전자담배, 가열담배 제외);
- 산업통상부, 농업환경부, 보건부의 전문 관리 분야에 속하는 식품 취급업;
- ...

3. 시행규칙 제55/2026/TT-BTC호 (2026.05.15.) — 베트남 내 투자활동 및 투자유치 관련 서식·보고서에 관한 규정, 재무부 장관 공포 (공포일: 2026.05.15.; 시행일: 2026.05.15.)

2026년 5월 15일부터, 베트남 내 투자활동 관련 신규 서식 29종(투자자 적용)이 전면 시행됩니다. 구체적으로:

서식 I.1.1: 투자 프로젝트 시행 신청서

서식 I.1.2: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(관할기관이 작성하는 투자방침 승인 대상 프로젝트)

서식 I.1.3: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

서식 I.1.4: 투자자 승인 신청서

서식 I.1.5: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서

서식 I.1.6: 투자자 신청서(시행령 제96/2026호 제28조 제5항에 따른 토지 인도 지연의 경우,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일정 또는 활동기간 조정)

서식 I.1.7: 투자자 신청서(행정단위 개편 및 2단계 지방정부 조직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시행장소 정보 갱신)

서식 I.1.8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일반 조정의 경우)

서식 I.1.8.a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투자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)

서식 I.1.8.b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투자자가 담보자산인 프로젝트를 양수하는 경우)

서식 I.1.8.c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투자 프로젝트의 분할·분리 및 합병의 경우)

서식 I.1.8.d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경제조직의 분할·분리·통합·합병·형태전환;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경제조직 설립의 경우)

서식 I.1.8.e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토지사용권·토지부착자산을 기업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경우)

서식 I.1.8.g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토지사용권·토지부착자산을 사업협력에 사용하는 경우)

서식 I.1.8.h: 투자 프로젝트 조정 신청서(법원·중재기관의 판결·결정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조정의 경우)

서식 I.1.9: 프로젝트 시행 현황 보고서

서식 I.1.10: 투자 프로젝트 활동기간 연장 신청서

서식 I.1.11: 프로젝트 활동 자체중단 결정 통보서

서식 I.1.12: 투자 프로젝트 활동 자체종료 결정 통보서

서식 I.1.13: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/주식매수/지분매수 등록서

서식 I.1.14: 사업협력계약(BCC)상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사무소 설립 등록서

서식 I.1.15: 운영사무소 등록증 조정 신청서

서식 I.1.16: 사업협력계약(BCC)상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사무소 활동 종료 통보서

서식 I.1.17: 투자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
서식 I.1.18: 투자등록증 기재정보 정정 신청서

서식 I.1.19: 투자등록증 반납 신청서

서식 I.1.20: 투자등록증 교환 신청서

서식 I.1.21: 투자보장조치 적용 신청서

서식 I.1.22: 애로사항·건의사항 반영서

유의사항:

본 뉴스레터는 참고용 자료입니다. 기업 또는 개인께서는 법령 전문을 확인하시고,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절차 및 서식을 정확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